대학원 계약학과 운영 내규

한국항공대학교

개정 기록표

번호	개정일자	개정자 (서명)	번호	개정일자	개정자 (서명)
1	2018.10.22		16		
2			17		
3			18		
4			19		
5			20		
6			21		
7			22		
8			23		
9			24		
10			25		
11			26		
12			27		
13			28		
14			29		
15			30		

대학원 계약학과 운영 내규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한국항공대학교 대학원학칙(이하 “학칙”이라 한다) 제55조 내지 제63조에 의거 계약학과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계약학과”라 함은 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다목의 산업교육기관이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설치·운영하는 학부·학과·전공을 말한다.
2. “재교육형 계약학과”라 함은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이 그 소속직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향상 또는 전직교육을 위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면서 교육을 의뢰하는 경우 설치하는 계약학과를 말한다.

제3조(계약학과의 명칭·학생정원 및 수여학위명) 계약학과의 명칭, 학생정원 및 수여학위명은 대학원 학칙에 따른다.

제4조(입학자격) ① 계약학과에 지원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야 한다.

1. 석사학위 과정은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
2. 박사학위 과정은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
3. 계약을 맺은 산업체에서 9개월 이상 재직한 자(입학일 기준)

② 계약학과 학생은 산업체에서 추천한 소속직원 중 선발한다.

③ 계약학과 추천서에는 입학하고자 하는 학생의 재직증명서, 4대보험 가입증명서 및 원천징수 영수증, 산업체의 건강보험사업장 적용통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제5조(학생 선발의 기준 및 방법) ① 계약학과의 학생은 학칙에 정한 바에 따라 해당 학위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학력을 갖춘 자 중에서 선발한다.

② 입학전형은 서류심사 및 면접으로 실시하며,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제6조(학점인정) 계약학과에 입학하는 자가 교육과정과 관계되는 근무 경력을 가진 경우에는, 당해 계약학과의 졸업이수학점의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여 학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, 근무경력과 학점의 인정범위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제7조(이수학점) ① 교과학점은 석사학위과정 24학점, 박사학위과정은 60학점(석사학위 취득학점 포함)을 최저로 한다.

② 연구지도학점은 교과학점 이외에 지도교수 선정 때부터 매학기 2학점씩 부여된다

③ 졸업에 필요한 필수과목 등의 교과과정은 학과별 운영내규로 따로 정한다.

제8조(자격시험) ① 학생은 각 과정의 전공에 필요한 영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.

② 자격시험별 세부사항은 학사운영 내규로 따로 정한다.

제9조(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) 계약학과에 입학한 학생의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은 각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제64조에 의한다.

제10조(휴학 및 복학) ① 계약학과 학생은 원칙적으로 휴학이 불가하다. 단, 학생이 타지역으로 전보되는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휴학을 원하는 경우에는 산업체의 승인 후 휴학할 수 있다.

② 휴학기간은 1회에 2개학기를 초과할 수 없고, 통산하여 4개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. 단, 군복무, 육아로 인한 휴학 및 타 지역 전보로 인한 휴학은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18.10.22>

③ 휴학자의 복학은 복학 당해학기에 계약학과가 지속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.

제11조(운영경비 및 부담) ①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그 부담은 산업체 등과의 계약 체결 시 상호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.

② 계약학과를 설치, 운영하는 산업체 등의 부담금은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.

제12조(퇴직 및 계약학과의 폐지로 인한 학생의 보호) ① 계약학과의 운영기간이 끝나기 전에 계약학과가 폐지되는 경우 당해 계약학과에 재학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그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학과・학부・전공에서 잔여기간의 교육을 받도록 하되,

학생의 졸업 시 소속은 기존 계약학과로 한다.

② 계약학과 학생이 산업체 등에서 본인의 원에 의하여 퇴직한 경우, 징계해고,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우에는 입학의 취소 또는 제적 처리한다.

③ 구조조정 등 본인의 원에 의하지 않는 퇴직 후 학생신분을 유지하는 경우 잔여기간의 교육은 당해 계약학과에서 맡는다.

제13조(운영위원회) ① 계약학과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·조정하기 위하여 계약학과 운영위원회(이하 "운영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② 운영위원회는 항공·경영대학장, 대학원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, 관련 전공 주임교수 등 총장이 지명하는 4명 이내의 위촉직 위원과 산업체 관계자(학생 포함) 3명으로 구성한다. <개정 2018.10.22>

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항공·경영대학원장으로 한다.

④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산업체와의 계약에 관한 사항
2. 운영경비의 부담 및 장학금에 관한 사항
3. 계약학과 교육과정의 편성, 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
4. 계약학과 운영 및 폐지에 관한 사항
5. 기타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

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단, 학생대표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

<신설 2018.10.22>

제14조(준용규정) 이 규정에서 규정된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한국항공대학교 대학원학칙 및 동 시행세칙, 당해 학부 학사내규 등을 준용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내규는 2017년 6월 19일부터 시행하되, 2017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개정 내규는 2018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.